

인권헌장

2024

동서페더럴모쿨

1. 제정목적

동서페더럴모굴은 자동차 핵심부품 제조업체로서 국가와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여 창의적 사고와 끝없는 도전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창출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는 데 노력하는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

우리는 인권경영을 적극적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 운영에 따른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관련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본 인권헌장을 선언한다. 동서페더럴모굴은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및 국제노동기구 헌장, OECD 실사 가이드라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적용범위

인권헌장의 적용대상은 동서페더럴모굴에서 투자한 전 계열회사에 한하며, 동서페더럴모굴 임직원은 공급자 및 판매·서비스 조직을 대할 때에도 본 인권헌장을 따라 행동한다.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조직의 모든 임직원은 해당 국가의 법규를 준수하는 동시에 본 인권헌장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더 나아가 당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도 본 인권헌장을 존중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3. 인권헌장

1. 차별금지 :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임직원의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모집, 채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의 고용과 관련해 차별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한다.

2. 근로조건 준수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근로에 대한 합당한 보수를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한다. 또한, 모든 임직원의 역량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분한 교육기회와 직무수행에 적절한 업무환경을 제공한다.

3. 인도적 대우 :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며,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으로 강압, 학대, 불합리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본 인권헌장이 적용되는 국가의 노동관계법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에게 충분한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한다.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 모든 임직원에게 대해 폭행, 협박, 감금 등의 행위를 하거나, 신분증 또는 사증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또한, 아동노

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6. 산업안전 보장 : 모든 임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시설, 장비, 도구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신체적·정신적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7. 지역주민 인권 보호 :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 자유를 보호한다.

8. 고객 인권 보호 : 모든 임직원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시, 고객의 생명, 건강,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경영활동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9. 개정 및 교육 :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정해야 하고 소속 임직원이 본 인권헌장이 추구하는 의미를 존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0. 위반시 처리 : 위반사항 발생시 사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위반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1. 담당 연락처

▶ 인권 관련 상담 및 제보처리 창구

이메일 : 홈페이지내 사이버 인권신고 및 365suna@dongsuhfm.co.kr

전화 : 031-362-1714, 팩스 : 031-363-3942

우편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로 74 HES팀(우편번호 15599)